수입인지 1,000 원

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

사 건 번 호　　20　　타경　　부동산강제(임의)경매

신 청 인　　○○○

(주소)

피 신 청 인　　○○○

(주소)

신 청 취 지

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(매수인)은 20　.　.　. 매각대금을 낸 후 피신청인(□채무자, □소유자, □부동산 점유자)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, 민사집행법 제 13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.

20　.　.　.

신청인(매수인)　　(서명 또는 날인)

(전화번호 :　　)

○○지방법원(○○지원) 귀중

※ 유의사항

1.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 개월 이내에 채무자·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괄호안 네모(□)에는 피신청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표시(√)하시기 바랍니다(예를 들어 피신청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경우에는 "√채무자, √소유자, □부동산 점유자"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).
3. 당사자(신청인+피신청인) 수×3 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시고, 송달료 납부서(법원제출용)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부동산의 표시

<예시>

1.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동 100

대 100㎡

2.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동 100
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길 25

위 지상

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

50㎡. 끝.